

대만민법전(법무부) 번역의 추록 및 정오표

1. 개정추록(2012년 12월-2013년 4월 현재)

[34쪽]

- 제24차 개정
- 개정일 : 2012년(中華民國 101年) 12월 26일 공포
- 개정조문 : 제1009조, 제1011조 (삭제), 제1030조의 1(개정)

[44쪽]

- 제8차 개정
- 개정일 : 2012년(中華民國101年) 12월 26일
- 개정조문 : 제6조의3

[45쪽]

- 제6차 개정
- 개정일 : 2012년(中華民國101年) 12월 26일
- 개정조문 : 제1조의 3
- 제7차 개정
- 개정일 : 2013년(中華民國102年) 1월 30일
- 개정조문 : 제1조의 1, 제1조의 2

[535쪽]

제1009조 (삭제) 第1009條 (刪除)

[537쪽]

제1011조 (삭제) 第1011條 (刪除)

[545쪽]

제1030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제3항의 신설과 제4항의 항번호 변경)

제1030조의 1 ①-② [...]

③ 제1항의 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이미 계약으로 승낙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第1030-1條 [...] 第一項請求權，不得讓與或繼承。但已依契約承諾，或已起訴者，不在此限。 [...]

[613쪽]

제6조의 3 본 법은 중화민국101년(2012년) 12월 7일 개정시행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산제로 변경사용(改用)할 것을 법원에 신청하거나 이미 채무자를 대위하여 나머지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것을 소재기하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6-3條 本法中華民國一百零一年十二月七日修正施行前，經債權人向法院聲請宣告債務人改用分別財產制或已代位債務人起訴請求分配剩餘財產而尚未確定之事件，適用修正後之規定。

[659쪽]

제1조의 1 ① 상속이 민법상속편에서 중화민국 96년(2007년) 12월 14일 개정 시행 전에 개시되고 개정시행 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법정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개정시행일로부터 개정 후의 상속포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상속인이 민법상속편에서 중화민국 96년(2007년) 12월 14일 개정시행 전에 개시되고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된 때에 행위무능력자나 제한행위능력자가 되어 개정시행 전의 법정기간에 상속의 한정이나 포기를 할 수 없으면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제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자가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 항의 상속인이 개정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第1-1條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六年十二月十四日修正施行前開始且未逾修正施行前為拋棄繼承之法定期間者，自修正施行之日起，適用修正後拋棄繼承之規定。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六年十二月十四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於繼承開始時為無行為能力人或限制行為能力人，未能於修正施行前之法定期間為限定或拋棄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項繼承人依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債務，不得請求返還。

제1조의2 ① 상속이 민법상속편 중화민국 97년(2008년) 1월 4일 전에 개시되고 상속인이 상속개시한 후에 이행책임에 대위하여 부담하는 보증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을 한도로 변제책임이 있다.

② 전 항의 상속인이 중화민국 97년(2008년) 4월 22일 개정시행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변제한 보증계약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第1-2條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七年一月四日前開始，繼承人對於繼承開始後，始發生代負履行責任之保證契約債務，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項繼承人依中華民國九十七年四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保證契約債務，不得請求返還。

제1조의 3 ① [...] 중화민국 98년(2009년) 5월 22일 [...]

② 상속이 민법상속편에서 중화민국 98년(2009년) 5월 22일 개정시행 전에 상속인이 이행책임을

대위하여 부담하는 보증계약으로 인한 채무가 이미 발생되면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자가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속이 민법상속편에서 중화민국 98년(2009년) 5월 22일 개정시행 전에 개시되고 상속인이 이미 민법 제1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습상속하면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제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자가 현저하게 공평을 잃은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속이 민법상속편에서 중화민국 98년(2009년) 5월 22일 개정시행 전에 개시되고 상속인이 자기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동거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공동하는 경우에 상속개시할 때에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어 개정시행 전의 법정기간 내에 상속을 한정하거나 포기할 수 없게 되면 취득한 상속재산을 한도로 변제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자가 명백하게 공평을 잃은 것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3항의 상속인이 개정 시행 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第1-3條 [...] 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 [...]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對於繼承開始以前已發生代負履行責任之保證契約債務，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已依民法第一千一百四十條之規定代位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繼承在民法繼承編中華民國九十八年五月二十二日修正施行前開始，繼承人因不可歸責於己之事由或未同居共財者，於繼承開始時無法知悉繼承債務之存在，致未能於修正施行前之法定期間為限定或拋棄繼承，以所得遺產為限，負清償責任；但債權人證明顯失公平者，不在此限。

前三項繼承人依修正施行前之規定已清償之債務，不得請求返還。

2. 조문의 누락과 수정

[409쪽]

제807조 다음을 추가한다.

③ 제805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19쪽]

제827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② 전 항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동관계는 법률규정이나 관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정오표

쪽수		수정 전	수정 후
383쪽	제757조	본 법	법률
387쪽	제768조	동산을 점유한 자는	타인의 동산을 계속 점유한 자는
393쪽	제782조	② 과실로 발생되거나	과실 없이 발생되거나
401쪽	제796조의 1	② 전 항 제1항	전 조 제1항
405쪽	제800조의 1	제774조의 규정은	제774조 내지 전조의 규정은
423쪽	제834조	차입	지료
	제835조		
	제835조의 1	도한	또한
425쪽	제836조의 1	소유권을	소유권을
433쪽	제850조의 1	② 없다.	없다.
437쪽	제850조의 7	③ 산출물을	산출물이
439쪽	제852조	② 1인의 행위에 대하여	1인에 대한 행위는
	제854조	지역권자	부동산역권자
		승역지	승역부동산
481쪽	제911조	소유권의 권리를 취득하는	소유권을 취득할
495쪽	제943조	2.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그 점유설정자에게 하는 행사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그 점유설정자에게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행사
497쪽	제944조	① 공연하게 점유	공연하고 과실없이 점유
	제948조	① 양도인	양도인
		② 현실인도를 받고 선의의 인도	② 현실적 인도를 받고 인도시에 선의인 경우
499쪽	제949조	② 그 물건의 회복한 자	그 물건을 회복한 자
501쪽	제954조	①	①의 삭제

4. 이후의 개정 · 수정사항은 출판사(민속원)의 홈페이지(<http://www.minsokwon.com/>)에 올릴 예정임.